

「구미시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
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-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
-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운영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하고자 함

※ 업무협약 주요사항

기 관 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민간운영사업자	충전기 구축비용 100% 부담 및 운영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구미시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사업
- 2) 기간 : 2026. 1. ~ 2.
- 3) 설치대상지 : 원평동 112-1 일원
- 4) 주요시설 : 급속 충전기 1기, 완속 충전기 4기

나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 : 민간운영사업자 등
 - ※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 사업자 협약을 통하여 선정
- 2)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- 3)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4) 운영방안 : 개방적 운영
 - ※ 근거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1항

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- 1) 설치장소 및 수량 : 설치대상지 1개소 / 충전기 5대(급속 1, 완속 4)*

구분	계	급속	완속	비고
대상지(개소)	1	1		
충전기(대)	5	1	4	

* 설치대상지 현지실사 완료 후 수량 및 충전기종(급속 or 완속) 확정

- 2) 설치대상지 (26년 준공 예정)

연번	구분	총주차 면수	수량		담당부서	주소	비고
			급속	완속			
총계	1개소	89	1	4			
1	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	89	1	4	건축디자인과	원평동 112-1 외 2필지	신설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6. 1. :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
- 2) 2026. 1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
3) 2026. 2. : 사업 착수

4) 2026. 2. : 사업 완료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제11조의3
-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(원평동 112-1 일원, '26.2.준공 예정)에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.
- 총 주차대수가 89면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50대¹⁾ 이상이므로,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인 5대²⁾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함.
-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5

2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7